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54호 2016. 5. 20(금)

훈 령

- 사천시 훈련 제317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 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2)

공 고

사천시 훈령 제317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5월 2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이란 (이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3)

2.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이란 출석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 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출석수업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습과정을 말한다.
4. “학습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습과정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평가인정서의 교과목별 정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아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관장) 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관장이라 칭한다.

② 관장은 시장이 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대표하며 교무를 총괄한다.

제3장 교수·강사

제5조(교수·강사 등) ① 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강사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4)

③ 관장은 전·겸임 교·강사, 시간제강사 등을 두어 교육·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④ 관장은 교·강사의 강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전임 교·강사에게 겸임·시간제 강사를 관리 지도할 수 있게 한다.

제2장 학습자, 수업

제6조(학습자 모집) 관장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계획,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학습비, 교수·강사명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이 발급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에 기재된 총정원 내에서 모집하여야 한다.

3. 학습자 모집 시, 특정 다른 교육훈련기관(학습과정 포함)을 명시하여 안내하거나 교육훈련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모집할 수 없다.

4. 영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학습과정명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과, 학부,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자격) ①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전형 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② 지원자 선정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5)

1. 사천시내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천시 소재 직장에 근무 하는 사람
3. 관외 지역 거주자

제8조(지원서류) 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등록(재등록)시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9조(등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강 신청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일내에 학습비를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 제출 후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정한 기일 내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학습비

제11조(학습비) ① 관장은 매년 학습비를 결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학습비는 고지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③ 학습비 수납기한은 학습과정의 개강일 하루 전까지로 한다.

④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징수하며, 학습자 모집 시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학습비를 수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6)

⑤ 관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와 실험·실습·실기·기타 교육연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입학금, 학생회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납입금의 반환) ① 납입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1. 납입금이 과·오납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생이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못 할 경우
4. 학생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신청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학습비의 감면) 관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비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하여야 한다.

제4장 수업

제14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교육과정과 평생학습센터 비학위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7)

1. 학점은행제 교육과정(학점인정 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시하는 표준교육과정 중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가 평가 인정받은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2. 비학위 교육과정(학점인정 안됨) :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학습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교육과정

제15조(교과목 이수단위)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학점 당 최소 8주 이상에 걸쳐 강의를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점은행제 이수학점 : 학기당 최대 24학점, 연간 42학점

나. 평생학습센터 비학위 교육과정 : 전공별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16조(수업관리) 교·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학사 일정 준수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3. 수업 결손 및 조기 종강 금지
4. 강의시간 임의변경 및 변칙 운영 금지
5. 외부강사,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금지

제17조(휴강과 보강) ① 학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휴강 외에는 휴강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8)

② 부득이하게 휴강을 할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학습자의 출·결석) ① 교·강사는 매 수업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출결사항을 기록하며 출석부에 결강일 및 보강일을 철저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석부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담당 교·강사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각, 조퇴 각 3회 시에는 결석 1회로 산출하고, 출석률이 80퍼센트 미만일 경우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출석을 인정한다. 다만, 이 사유에 의한 결석은 실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계 존·비속의 사망
2. 병무에 의한 결석
3. 본인의 결혼
4. 본인의 입원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6.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9조(시험) 시험의 종류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강의평가) ① 학습자는 기말시험 실시 후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9)

② 강의평가 점수가 저조한 교·강사의 경우 다음 학기 계약 결정시 결과를 반영한다.

제21조(성적평가) 성적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 및 기말시험 성적,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 과제물 성적은 전체 성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80퍼센트 미달한 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4.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아래와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점 이상	4.50	A	90~94점	4.00
B+	85~89점	3.50	B	80~84점	3.00
C+	75~79점	2.50	C	70~74점	2.00
D+	65~69점	1.50	D	60~64점	1.00
F	59점 이하	없음			

5. 평생학습센터 비학위 교육과정은 “P” (합격), “F” (불합격)로 평가 하되, 성적평점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6. “D” 등급(6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7.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취소한다.
8. 수업일수 2/3이상을 수강하고 군입대 등으로 인해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기말고사 및 과제물 평가로 성적 인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10)

제4장 학위

제22조(학위취득 요건)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취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법 제7조에 따라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18학점 이상으로 합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23조(학위신청) ①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수여 신청서
2. 학점이수 증명서

② 제1항 각호에 의한 신청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4조(학위수여 심사) 관장은 학위 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 여부를 심사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대상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학위수여) ① 법 제9조, 영 제13조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는 관장이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학적관리

제26조(학적관리) 관장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등록된 학생의 학적을 따로 관리하며, 학적과 관련한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11)

제6장 학생활동

제27조(학생단체) ① 학생은 학습동아리 및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28조(학생활동 등)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과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을 방해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3.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장학금 및 징계

제29조(포상 및 장학금) ① 관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포상할 수 있고, 포상 받은 학생 중 학비조달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위탁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학력 우수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제30조(징계) 관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12)

1.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사람
2. 학교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킨 사람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학칙을 위반한 사람

제8장 상담창구

제31조(상담창구) ① 관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창구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장 교수·강사 및 학습자 질 관리

제32조(질 관리 방안) ① 관장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전문적이고 우수한 교·강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20조 학습자의 강의평가를 통해 우수 교·강사는 재계약시 우선하여 할 수 있으며, 학사 과정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을 경우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학습자의 질 관리를 위해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으로 학습·도서실 개방을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제33조(준용)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 및 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13)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원 원서

접수 번호	희망학위		<input type="checkbox"/> 학 사 <input type="checkbox"/> 전문학사	지 원 전공명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	사 진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3× 4cm)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원	주소	(-)					
	전화		휴대전화		E-mail		
사	직 장 명					부 서 명	
	최종 학력	학 교 명	학 교 학과		취득 학점	총 점	전 공
졸업일자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졸업예정		교 양 (교직)			
자격증/면허증					발행처		

상기 본인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학사과정에 학습자로 지원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교육훈련기관장 귀하

※ 첨부서류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③ 면허증 사본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월이내 발급분)
- ⑤ 사진(3×4) 3매
- ⑥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지제공동의서

※ 제출서류 및 지원서 작성을 허위로 작성한 사항은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사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과정과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의 2(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에 의거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 필 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본인식별절차, 제증명서 발급, 면허(자격)증 발급	학위취득 및 자격발급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학점인정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필 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사진,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학위취득 및 자격발급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이메일주소, 연락처	공지사항, 서비스 정보의 제공	
주소	관련자료 발송 등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출신학교, 학과, 졸업(예정)일 등, 수습기관 등)	자격 확인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학점인정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고유식별정보) : 필 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업무	학위취득 및 자격발급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교육부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업무	상 동
관련 협회 및 사무국		면허(자격) 발급	상 동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학점인정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 . . .

생년월일 : . . .

성 명 : . . .

(인 또는 서명)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15)

【별지 제2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201 학년도 학기 No. _____

지 원 자	성 명		사 진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3×4cm)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지		

학점은행제 수강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전문학사)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학사)
----------------	--------------------------------------	------------------------------------

	연 번	과 목 명	학점	요일·시간	구 분	금 액	비 고
수강 신청 내역	1				주·야		
	2				주·야		
	3				주·야		
	4				주·야		
	5				주·야		
	6				주·야		
	7				주·야		
	8				주·야		
	합 계						

- ◇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신청 및 학습설계 시 필요
- ◇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준 영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여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01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454호(16)

【별지 제3호서식】

수강취소(환불) 사유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역 락 처 :
과 목 명 :
금 액 :
취소(환불)사유 :
환불계좌번호 : (은행명) -

(※ 수강료 환불은 수강생 본인명의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환불시 필요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환불계좌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위의 사유로 인해 수강 신청 취소 및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장 귀하